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

의안번호

493

1. 제안경위

-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을 조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세입·세출결산서 제출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으로,
- 2005. 5. 6. 서울특별시장이 우리시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2004. 5. 12. 회부됨

2. 검토의견

- 재단 이사장의 직무대행 권한 조정 관련
 - 현행 조례에서 직무대행 권한을 "복지여성국장"으로 규정한 것을 "서울특별시 여성정책 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상위 직급 순"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서울특별시 직제개정으로 실·국 명칭이 변경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입법절차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 현행 직제상으로 볼 때 제1정책보좌관(복지·여성정책보좌관)이 재단 이사장의 궐위·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참모·보좌기능의 정책보좌관이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
- 재단 세입·세출결산서 제출기한 단축 관련
 -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(부령)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·세출결산서 제출기한을 "3월 이내"에서 "2월 이내"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는 내용임